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10. 5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
과 장 : 주 원 철
사무관 : 송 재 원
전 화 : 500-1871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3P)

이 자료는 2011년 10월 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세안 국가들과 식량안보 및 농림수산 분야 협력강화 논의 - 제11차 아세안+3 농림장관회의 참석 -

〈 주 요 내 용 〉

- ◇ 농림수산식품부(수석대표:김종진 통상정책관)는 제11차 아세안+3 농림장관회의에 참석
 - 아세안+3 비상쌀비축제(APTERR) 협정 서명 및 아세안 국가와의 농림수산 분야 협력활동 논의·승인
 - APTERR :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10.7(금)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+3 농림장관회의에 대표단(수석대표: 김종진 통상정책관)을 파견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식량안보 및 농림수산 분야 협력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김종진 통상정책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간 아세안+3 국가간 협력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.

※ 아세안+3 농림장관회의는 아세안과 한·중·일 3국간 식품, 농업, 임업, 어업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함

○ 또한, 대표단은 아세안과 추진 중인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(5건)을 소개하고, 지속적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.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은 역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-아세안 네트워크 구축사업(수산과학원), 식물검역 연수사업(검역검사본부), 농촌지도시스템 향상사업(농촌진흥청),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연수사업(농식품부), 신선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사업(한국식품연구원)

□ 특히, 이번 회의에서 농림장관들은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)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. 아세안+3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비축미나 정상적인 무역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축된 쌀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재난 발생국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는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·비축하고, 비상 시 약정물량을 판매·장기차관·무상으로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·중·일의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.

○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약정물량 78.7만톤의 약 19%에 달하는 15만톤의 쌀을 약정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는 동시에, 15만톤 내에서 쌀 지원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국내 쌀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산림청은 회의 기간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각국 농림장관들에게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. 관련 협정 서명이 제14차 한-아세안 정상회의('11.11, 인니 발리)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향후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아시아 산림분야의 리더십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1

ASEAN+3 비상쌀비축제(APTERR) 사업 개요

(담당 : 식량정책과 정명호 사무관, 02-500-1978)

- (사업개요) ASEAN+3 국가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각국이 약정한 쌀을 상호 지원
- (추진경과) APTERR 협정문(안)이 최종 합의되어 이번 제11차 AMAF+3 회의에서 서명 예정
- '79년 아세안 지역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"아세안 식량안보 비축제(AFSR : Asean Food Security Reserve)" 합의
 - AFSR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자 '01년 ASEAN+3 농림장관 회의시 한·중·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쌀비축시범사업(EAERR :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)을 결정하여 '04~'07년까지 추진
 - '08년부터 본사업인 아세안+3 쌀 비축사업(APTERR)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위원회 구성
 - 논란이 있었던 APTERR위원회 의장 선정은 매년 알파벳 순서대로 아세안회원국 중 1개국과 +3(한·중·일) 중 1개국이 공동의장을 맡기로 합의
- (향후계획) 비축물량의 방출 절차, 가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시아 개발은행(ADB)의 자문과 향후 APTERR 준비위원회의 논의 및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

<ASEAN+3 비상 쌀 비축제>

- (비축방식) 쌀을 원조하겠다는 공약만 하는 약정방식(earmark)과 약정한 쌀을 APTERR 사무국에 제공하는 비축방식(stockpile) 존재
- (약정물량) 우리나라는 약정방식으로 15만톤의 쌀 약정

(단위 : 천톤)

중국	일본	한국	태국	베트남 미얀마	필리핀 인도네시아	말레이시아	싱가폴	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	합계
300	250	150	15	각 14	각 12	6	5	각 3	787

- (기금 및 운영비용) 한·중·일은 협정발효 후 5년 내 각각 100만불의 APTERR 운영기금 납부하고, 기금조성 전 5년간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매년 7.5만불 납부

붙임2**ASEAN+3 비상쌀비축제(APTERR) 협정문 요약**

(담당 : 식량정책과 정명호 사무관, 02-500-1978)

1. 구성 : 서문, 10개 조항, 3개 첨부로 이루어짐**2. 주요 내용**

- 서문 : 회원국 현황,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, 설립목적을 명시
- 제1조(정의) : APTERR(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), 비상 쌀 비축 약정물량, 비상 등 용어 정의
- 제2조(일반조항) : APTERR 당사국이 식량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반사항 및 본 협정문이 기존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
- 제3조(APTERR 설립) : 비상수요에 대처하고 인도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, 정상적인 국제 쌀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함을 규정
- 제4조(이행) : APTERR에 비축된 쌀의 방출 및 약정물량의 보충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
- 제5조(쌀 정보 교환) : 효율적인 사업이행을 위해 APTERR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의 정책관련 정보 및 수요공급 등 식량안보 정보 공유
- 제6조(APTERR 기금 설립) : APTERR 당사국은 APTERR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기금(Endowment Fund)과 운영비 기금을 부담
- 제7조(APTERR 위원회) : APTERR 위원회는 매년 알파벳 순서대로 ASEAN 회원국 중 1개국과 +3국가 중 1개국이 공동의장을 맡음
- 제8조(APTERR 사무국) : 본 사업을 지원할 APTERR 사무국 설립
- 제9조(분쟁해결) : 상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 또는 당사국간 협의하여 조정하되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음
- 제10조(최종 규정) : 최소 6개국의 ASEAN 회원국과 1개국의 +3 국가의 비준서, 수락서 또는 승인서 기탁한 날 후 30일째 발효함
- 첨부 : 1)각국의 약정물량, 2)기금 분담금현황, 3) 위원회 위임사항

붙임3**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설립 개요**

(담당 : 산림청 이용권 사무관, 042-481-4277)

□ 기구의 명칭(안)

- 국 문 : 아시아산림협력기구
- 영 문 :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(AFoCO)

□ 기구의 목적

- 산림부문 협력 증진을 통하여 기후변화, 사막화 등 아시아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녹색 성장을 통한 역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
- 아시아지역 산림을 생태적, 환경적,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경영,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증진

□ 기구의 유형

- 아시아 국가들이 비준한 협약으로 설립되는 다자간 지역기구
 - 국제법상 독립적·영속적인 법인체로 회원국 총회 등 의사결정 기관 및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을 보유
 - 1단계로 한·아세안 양자형태로 우선 출범, 2년후 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확대
- 기구의 협약은 잠재적인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여 서명한 후에 개별국가별로 국회비준 절차 진행
 - 한국과 아세안 6개국 이상이 내부절차 완료통보시 30일 이후 발효
 - ※ 기탁처 : 한국(외교통상부), 아세안(아세안사무국)

□ 기구의 구성 및 조직

- AFoCO는 총회, 이사회,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부속센터(열대림 복원센터, 사막화방지센터, 아시아산림기술연구센터 등)를 둘 수 있음